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38

발의연월일: 2022. 10. 18.

발 의 자: 박성중·서일준·윤한홍

허은아 · 김영식 · 윤두현

주호영 · 홍석준 · 황보승희

권성동 · 강기윤 · 하영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카카오의 SNS, 결제서비스, 모빌리티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하 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 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래픽 발생량 증가에 의한 과부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화재 또는 전쟁 등에 의한 물리적인 문제 발생 시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 조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

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	획의 수립) ①
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	
(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방송통신재난"이라 한	
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	
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	
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u>자</u>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2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2. (생략)
-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 한 사항

가. ~ 다. (생 략)

<신 설>

4. (생략)

_	-	_	_	-	-	_	_	-	_	-	

- 1. · 2. (현행과 같음)
-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이중화 및 이원화

4. (현행과 같음)